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전문임기제 가급/학예연구실장]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서울)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학예연구실장	전문임기제 가급	○ 학예연구실 업무 총괄 ○ 세계 속에 한국미술의 위상 재정립 및 한국작가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유일 국립미술관으로서 공적 역할 강화방안 마련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 11. 24.)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아래 우대요건을 고려한 서류전형 점수가 달리 반영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둘 중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응시자격 요건을 택일하여 응시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택일(우대요건 상 유리한 자격요건 확인 必)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응시자격요건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 항목 하나만 선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기준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구분	응시자격요건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 항목 하나만 선택)		
		학위 기준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 기관장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에서 전시·연구 등 관련 부서장 근무경력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 기관장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에서 전시·연구 등 관련 부서장 근무경력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직무관련 학과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교육, 미술경영학, 미술학(순수미술, 디자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 미술 실기분야) 등 계통 직무 관련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응시서류 작성 시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채용분야	응시서류의 응시자격요건 작성 예시	주의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1, 학위2, 학위3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 지원	중복 선택 X → 경력,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1.24.)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학위'요건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경력'은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 및 '학위'요건의 경력은 모두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 근무경력 필요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i)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 ii)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④ **(증빙의무)** ① ~ 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6. 9. 30.) 기준]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KCI 등재/2021. 1. 1. 이후)(건별 차등배점)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구간별 차등 배점)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IBT 86점 / TEPS 385점 /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IBT 97점 / TEPS 452점 /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등 수여 표창(상훈)(2021. 1. 1. 이후)(건별 차등배점)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9.3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연구논문] 직무관련 분야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2021. 1. 1. 이후 K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하며, 학위논문은 제외함

※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인 경우만 인정

- **[외국어 능력] 공인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영어) 성적**

※ '24.10.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9.30.)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4.10.1.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외국어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비고
영어 (구간별 차등우대)	1구간: TOEIC 790점 / TOEFL IBT 86점 / TEPS 385점/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2구간: TOEIC 870점 / TOEFL IBT 97점 / TEPS 452점/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기준점수 이상 우대 (복수 제출시 유리한 1건만 적용)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사본 등 제출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및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참고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격요건만을 소극적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 적극적 심사 기준 >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15명 이하	4배수
16명 이상	5배수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진행절차) 응시번호순으로 개별면접 실시(1인당 30분 이내)
- (결정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9.16.(수) ~ 9.30.(수)	'26. 9.28.(월) ~ 9.30.(수)	'26. 10.29.(목)	'26. 11.24.(화)	'26. 12.4.(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9. 28.(월) ~ 9. 30.(수),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예연구실장) 채용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2-3701-9781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봉투 겉면에 '공무원(학예연구실장) 응시자 000 기입'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나. 제출서류: 붙임 3 작성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인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 일반신청/결과조회 +

납부·고지·환급 | 공동사업자내역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대표자등록내역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정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발소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상당·불복·제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 채납 관련 신청 +

세무대리·납세관리 | 신고사실없음 | 휴·폐업·재개업 신고 + | 기타

종사업자등록내역 | 전용계좌개설여부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응시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6.12.4. ~ '27.1.3.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년 1월 4일 예정,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협의사항	69,663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확정하고, 확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02-3701-9781)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주요업무	○ 학예연구실 업무 총괄 - 미술관 중장기 정책 및 국제 교류, 연구 기획 총괄 - 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미술관 소장품·미술자료 수집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총괄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종합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세계 속에 한국미술의 위상 재정립 및 한국 작가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유일 국립미술관으로서 공적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근현대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미술관 전시 기획·운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 ○ 국가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리더십과 전문적 행정지식
------	--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가급(학예연구실장)	
응시자격요건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 기관장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등에서 전시·연구 등 관련 부서장 근무경력 ○ 관련분야 학위 -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교육, 미술경영학, 미술학(순수미술, 디자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 미술 실기 분야) 등 계통 직무 관련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KCI 등재/2021. 1. 1. 이후)(건별 차등배점) 3. 공인 외국어능력성적(영어)(구간별 차등 배점)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IBT 86점 / TEPS 385점 /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IBT 97점 / TEPS 452점 /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24.10.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9.30.)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4.10.1.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등 수여 표창(상훈)('21.1.1. 이후 수상건)(건별 차등배점)

지원자 제출서류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공통사항 (필수제출)	☐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 성명 및 서명 자필작성 필수		☐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 A4 요약서 1매 + A4 4매로 작성(총 5매 이내)		☐
5. 학위취득사항<별지서식 7호> ※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의 직접적인 평가(배·가점) 요소는 아니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학위와 채용직무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데에 참고자료로 제공 가능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8호> ※ 성명 및 서명 자필작성 필수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서식 9호> ※ 성명 및 서명 자필작성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개명한 경우 개명내역 포함		☐
9. 학위논문 요약서<별지서식 5호>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필수 제출 / 학사이상 졸업증명서, 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학위 사본,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사본 제출 ※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의 직접적인 평가(배·가점) 요소는 아니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학위와 채용직무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데에 참고자료로 제공 가능		☐
11. 경력(재직)증명서 ※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우대요건 해당자는 필수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연-월- 일, 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여부 정확히 기재(응시자격 요건 관련 소명),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12. 직무관련 연구논문 요약서<별지서식 6호> 및 논문사본 각 1부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제출 ※ 최근 5년 이내(2021.1.1.이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13. 어학성적(영어) 증빙서류 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면접)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14.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사본 ※ 2021.1.1.이후 수상한 건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인정		☐
1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1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10호> ※ 응시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6.12.4. ~ '27.1.3.		☐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 표시 후 제출
-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집게(클립)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

불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시원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학예연구실장)			
응시자격		경력	☐ 경력1	☐ 경력2	☐ 경력3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만 택일		학위	☐ 학위1	☐ 학위2	☐ 학위3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학예연구실장)			
응시자격		경력	☐ 경력1	☐ 경력2	☐ 경력3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만 택일		학위	☐ 학위1	☐ 학위2	☐ 학위3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
- ②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요건을 반드시 택일하여 기재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자격요건을 택일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요건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	------------------------------	---	------------------------------	------------------------------

2. 미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요건	☐ 경력1	☐ 경력2	☐ 경력 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	-------------------------------	------------------------------	------------------------------	------------------------------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응시 자격 요건	경력1,경력2,경력3, 학위1,학위2,학위3 중 택일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00과장 (4급)	상세히 작성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미술학		'00.00.00		미술학 석사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00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연구 논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KCI)	발표(게재) 연월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O/X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본인의 응시 직급 및 분야를 기재
- ③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경력 혹은 학위)”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요건을 반드시 택1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논문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KCI 등재/등재후보지는 해당없음)

- 2021. 1. 1. 이후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외국어 공인외국어 능력 어학(영어, 일어, 중국어 등) 성적

- 시험명, 등록번호, 점수, 성명 등이 표시된 증빙 사본 별도 첨부
- ※ '24.10.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9.30.)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4.10.1.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 복수 제출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표창(상훈) 정부·공공기관 등 수여 표창(상훈)

- 2021. 1. 1. 이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 제출(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표창(상훈)명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 ※ 글씨 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4매(총 5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되, 학위 요건 응시자는 필수작성 제출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연구논문 요약서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 학위 취득 사항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응시자가 전문학사 이상 학위에 대하여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의 직접적인 평가(배·가점) 요소는 아니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학위와 채용직무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제공 가능
- ※ 응시자격요건 혹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학위의 경우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자격요건 혹은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위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불필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한달 이내 희망자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